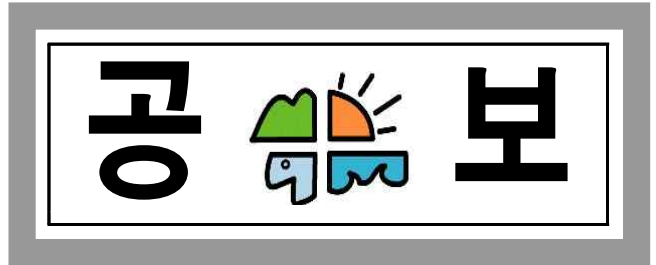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37호 2021년 7월 26일(월)

조 례

-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

규 칙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2
-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6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55호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인
용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위 임 사 무 명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 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취소, 경정 등	「지방회계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제32조 및 제33조
2	◦ 물품의 불용결정(취득단가 5백만원 미만의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3	◦ 자동차 변경등록(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 신청접수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등록령」 제22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
4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6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56호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통장의 임기 내에 주민의 자율의사에 의해 통장 추천이 안 될 경우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통장의 임기 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하며, 사직 및 해임 등의 사유로 새로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전임 통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적 물의 또는 논란을 일으켜 통장·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7. 통장·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영리행위 및 기타 이득을 취한 경우
8. 임기 중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9. 개인사정 등으로 자진사퇴 하였을 때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기간에 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② 통장 후보로 신청한 사람은 범죄경력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보고) 동장이 제5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

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의 임기는 통장 임명시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임기간이 3년 미만인 통장은 처음 임명, 3년 이상인 통장은 1회 연임, 6년 이상인 통장은 2회 연임한 것으로 본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6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857호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속초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고 그”를 “속초시 국민체육센터의”로,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속초국민체육센터”를 “국민체육센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체육센터의 개방 및 이용)”을 “(시설운영 및 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방시간”을 각각 “운영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2월 31일

3.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1월 1일과 설·추석 연휴 다음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관)

제6조의 제목 “(개방제한)”을 “(사용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방”을 “사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2명 이상”을 “단체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각 호마다 2명 이상”을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① 체육센터 시설사용료 및 초과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부터 카목 까지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제1항에 따른

등록 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차.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

카.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하. 속초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3. 추가할인

가. 30명 이상 단체 : 20%

나.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영) : 20%

다. 2종목 이상 등록시 : 각 종목별 10%

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제11조 관련)

□ 1일 및 1개월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대 상	사 용 료		비 고
		1일	1개월	
수 영 장	성 인	3,500	60,000	
	청소년·군인	2,500	45,000	
	어린이, 경로대상자	2,000	40,000	
헬 스 장	성 인	3,000	40,000	
	청소년·군인	2,500	30,000	
	어린이, 경로대상자	2,000	25,000	
에어로빅장	성 인	-	40,000	
	청소년·군인	-	30,000	
	어린이, 경로대상자	-	25,000	

□ 초과사용료

산 정 방 법	초 과 시 간
초과시간당 시설별 1일 사용료의 50%	30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인정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6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99호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활동내용을 11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속초시 ○○동 공고 제 호

통장모집공고

모집대상

- 통 명 : 제 통
- 관할구역 :
- 사 유 :

자격요건

- 통 관할구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거주 하는 사람
-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제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출서류

- 통장지원신청서 1부 (주민센터 내 비치)
- 자기소개서 1부
- 서약서 1부
- 그 밖에 주요경력 증빙서류

공고기간 : . . . - . . .

접수기간 :

문의사항 :

○ ○ 동 장

심 사 기 준 표

□ 심사대상자(대상지역 : 동 통)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 대 폰		

□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항목(비율)	점수기준	배점	특점	비고
1. 통 관할 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7년 이상 ~ 10년 미만	13		
	4년 이상 ~ 7년 미만	11		
	4년 미만	9		
2. 통장전담가능 여부 (25%)	겸직 없음	25		
	자유·자영업	21		
	기타	17		
3. 봉사활동 시간 (15%)	90시간 이상	15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봉사시간 단 속초시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시간
	60시간 이상~90시간 미만	12		
	3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9		
	1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6		
4. 행정기관 상훈 (5%)	장관상 이상	5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
	시장상 이상	3		
	기타	1		
5. 면접심사 (40%)	탁월	31~40		주민 신망도 및 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	21~30		
	보통	11~20		
	미흡	1~10		
총 계		100		
확인자	○○동장 ○○○ (서명)			

서 약 서

본인은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으며, 제출서류 및 통장 지원과정에 거짓이 있을 경우 해임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 ○○통장 지원자 ○○○ (서명)

○○동장 귀하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6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500호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고객”이란”을 ““이용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원접수”를 “회원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존회원”을 “등록기간”으로, “24일”을 “25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조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추가접수”를 “추가등록”으로,

“29일”을 “26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접수시간”을 “등록시간”으로, “07시”를 “9시”로 한다.

3. 등록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제5조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의거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을 “따라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를 “추가요금은 조례 제11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2를”을 “2분의 1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센터의 귀책”을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가피한 사정”을 “입원이나 장기출장 등”으로, “1주일 이상 시 1개월 범위에서 1회만”을 “월 1주일 이상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체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용일 이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다.

제13조 중 “고객은 별표 1”을 “이용객은 별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외원가입 신청서

접수일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연락처	집		
				휴대폰		
신청구분	회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성인 <input type="checkbox"/> 청소년·군인 <input type="checkbox"/> 어린이·경로대상자				
	신청종목	<input type="checkbox"/> 초급 <input type="checkbox"/> 중·고급 <input type="checkbox"/> 자유수영 <input type="checkbox"/> 헬스 <input type="checkbox"/> 에어로빅				
	강습시간					
신청기간	월 일 ~ 월 일 (개월)					
할인대상	<input type="checkbox"/> 국가보훈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병역명문가증 발급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및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가입여성(수영10세~55세) <input type="checkbox"/> 임산부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자마일리지소지자			확인	<input type="checkbox"/>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건강상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치료 중 <input type="checkbox"/> 회복 중		질환명	(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 기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에게 회원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등 처리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집·이용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집, 휴대전화), 주소 ※ 감면 대상일 경우 : 매회 재등록시 자격(취득)조건 여부 확인조회 이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됩니다.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회원접수 확인증	유의사항
○ 접수번호 : _____ ○ 접수일 : ○ 신청자 : _____ 상기와 같이 접수함. 확인자 : 속초시 도서체육센터 소장(인)	①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 입니다. ②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입니다. ③ 발급된 회원카드를 입장 시 안내데스크에 제출해 주십시오. ④ 센터 이용시간은 1일 1회 2시간 입니다. ⑤ 중환자 또는 질병(심장, 혈압이상)으로 인하여 운동이 곤란한 분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⑥ 본 센터는 공공시설물이므로 수영복, 수영모, 운동복, 실내운동화, 개인샤워도구(수건, 비누포함)는 꼭 지참 하셔야 합니다. ⑦ 이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가. 이용일 7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이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이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라. 월 이용일의 1/2를 초과 한 경우는 이용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⑧ 입원이나 장기출장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 월 1주일 이상 1회에 한하여 연기(확인서 첨부)가능합니다. ※ 모든 이용자는 시설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033)631-8365

【별지 제3호 서식】

수 입 일 계 표

담당자	담 당	소 장	결 재

【20 년 월 일】

(단위 : 명/원)

구 분		일 계		누 계		비 고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합 계						
회 원	소 계					
	성 인					
	청소년·군인					
	어린이·경로					
기 타	소 계					
	성 인					
	청소년·군인					
	어린이·경로					

감 면 신 청 서

접 수 일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감 면 내 용	감면대상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본인, 등록가족)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본인, 가족) <input type="checkbox"/> 참전유공자(본인) <input type="checkbox"/> 고엽제후유자(본인) <input type="checkbox"/> 5·18 민주유공자(본인, 가족) <input type="checkbox"/> 특수임무유공자(본인, 가족) <input type="checkbox"/> 의사상자(본인, 가족 및 1~2급 의사자의 활동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국군포로유공자(본인, 가족) <input type="checkbox"/> 병역명문가 증 소지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본인 및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임산부(분만후 6개월 미만 까지)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 <input type="checkbox"/> 할인(2종목이상, 여성할인)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관련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p>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p> <p>주민등록번호 :</p>			
민원인(동의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귀하			
기 재 요 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면사유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국가유공자 관련 증명, 장애인 증명, 수급자증명, 복지카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임산부 수첩, 학생증 등을 기재한다. 3. 할인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 할인의 경우는 수영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환 불 신 청 서

1. 원 금 액	금
2. 공제/일수	% + 일
3. 최종금액	금
4. 접 수 자	

결	담당자	담 당	소 장
재			

회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내용	환 불	사 유			
등록기간			신청종목	<input type="checkbox"/> 수영 <input type="checkbox"/> 헬스 <input type="checkbox"/> 에어로빅 (강습반 :)	
적용기간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첨부서류 : 1. 신분증 2. 통장사본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귀하

환 불 접 수 증

[고 객 용]

회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내용	환 불	사 유			
등록기간			신청종목	<input type="checkbox"/> 수영 <input type="checkbox"/> 헬스 <input type="checkbox"/> 에어로빅 (강습반 :)	
적용기간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1. 환불금액은 환불신청서 작성일을 기준(환급적용 불가)으로 정산합니다.
2. 1개월 총 이용일수를 25일로 하고, 반환은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이용연기 신청서

결	담당자	담 당	소 장
재			

접 수 일		접수번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연 기 내 용	연기기간	해소일자	
	연기사유	<input type="checkbox"/> 질 병	<input type="checkbox"/> 출 장
처 리 결 과		증빙서류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귀하			
기 재 요 령	1. 연기사유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병원진단서, 출장명령서 등을 첨부한다. 3. 연기는 7일이상, 월 1회만 가능 4. 연기신청은 연기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표】

□ 안전수칙

1. 수영장 안전수칙

- 수영하기 전 반드시 샤워한 후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 수영복 이외의 복장은 착용을 금지합니다. 특히, 위생적이고 쾌적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비치웨어, 반바지형 수영복은 착용 금지합니다.
- 수영하기 전 반드시 수영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음주 후에는 절대 풀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전염성 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추워질 때, 눈이 충혈 시에는 즉시 수영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체력관리상 1시간 이상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50분 수영, 10분 휴식)
- 배정된 강습레인 및 자유이용레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이용객은 이용을 제한합니다.
- 취학 아동중 저학년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입장 하셔야 합니다.

2. 헬스장 안전수칙

- 헬스복과 실내운동화를 꼭 착용하십시오.
-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 기구 사용법을 모르시거나 신체가 허약한 분은 상담 후 운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구는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주시고 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 주십시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체육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구에 앉아서 잠담하거나 오랫동안 앉아 있지 마십시오.